	신문방송국 규정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14. 2. 6.
		최종개정일자	
		담당부서	교무입학처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(이하 "대학" 이라 한다) 신문방송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신문방송국은 학보 발행과 방송을 통해 교내외의 새로운 소식과 공지사항 보도, 음악방송 등 대학문화 창달을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.

①신문발행

②정규방송

③특별방송

④대학의 행사 및 홍보자료 수집

제3조(관계법규의 준수 및 금지사항) 신문방송국은 신문잡지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, 전파관리법과 방송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한다.

제2장 조 직

제4조(구성) 신문방송국은 발행인, 주간, 편집국장 및 학생기자로 구성한다.

제5조(발행인) 발행인은 대학 총장으로 한다.

제6조(주간) 신문방송국 주간은 총장이 임명한다.

제7조(신문방송국) ①신문방송국은 제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집부, 취재부, 문화부, 사진부, 방송부 등을 두어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.

②신문방송국은 편집국장, 정기자, 수습기자 등을 둔다.

③편집국장은 학생기자의 직접선출에 의해 선출되며, 주간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.

④수습기자는 1학년 재학생 중에서 소정의 면접을 거쳐 선발한다.

제3장 운 영

제8조(재정) 신문발행과 방송에 소요되는 예산은 학생 자율적 경비로 한다.

제9조(규정의 개정)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주간이 편집국장과 상의하여 발행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